

보도자료



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9.5.15(수)
----	---------	----	--------------

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강 영 수(02-2100-2660)	담 당 자	김 영 민 사무관 (02-2100-2668)
책 임 자	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이 경 식(02-3145-6700)		황 선 오 팀 장 (02-3145-6710) 김 재 형 팀 장 (02-3145-6730)
	코스콤 기술연구소장 이 순 모(02-767-8014)		강 석 희 부 장 (02-767-7980)

제 목 :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

-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자산운용사 등으로 부터 펀드·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「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」이 5.15일(수) 금융위에서 의결
-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, 6.3일(월)부터 개인의 참여 접수를 받을 예정
- → '18.11.21일 '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(국조실 주관)'를 통해 발표되었던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과제가 모두 추진 완료

1. 개 요

- □ 2019년 5월 15일(수), 금융위에서 **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**가 펀드·일임재산 **운용업무를 위탁**받는 것을 **허용**하는 「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」이 의결('19.7.24. 시행 예정)
 - 또한, 코스콤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('19.6.3. 개인 참여 접수 예정)
- ⇒ '18.11.21 '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(국조실 주관)'를 통해 발표되었던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과제가 모두 추진 완료
 - ※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(국조실 주관, '18.11.21)시 발표내용
 - ①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**자기자본 요건**(40억원) **폐지** → **시행중**('19.3.20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)
 - ②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**운용 허용** → **완료**(19.4.2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. 19.7.24 시행예정)
 - ③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·일임재산 **운용 위탁 허용** → **완료**('19.5.15 금융투자업규정 개정, 19.7.24 시행예정)
 - ④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 허용(코스콤 추진)
 → 관련 인프라 구축 완료('19.6.3일 개인 참여 접수 예정)

2. 금번 개선 사항

- ①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·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(19.5.15 금융위 의결)
 - (현행)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· 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
 - * 현재 펀드·일임재산 **운용업무**의 경우 **본질적 업무**이며, 본질적 업무의 경우 **동종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**에만 **위탁 가능**
 - ※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(투자일임업의 경우 자기자본 15억원) 등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자산운용사 등에 판매하는 등의 제한적인 형태로만 사업화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운 측면
 - (개선)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자산 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·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*할 수 있도록 허용
 - 다만, **투자자보호**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**책임을** 운용 업무 **위탁자**(자산운용사 등)가 **부담**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
 - ※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사업화 가능
- ②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 허용 (5월 초 코스콤이 관련 시스템 구축 완료하였으며, 6.3일부터 개인참여 접수 예정)
 - (현행) 법인만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(핀테크 기업 등)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* 참여를 허용
 - *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효성, 보안성 등을 운용심사 등을 통해 확인. **테스트 베드 통과**시 로보어드바이저로 직접 **투자자문·일임서비스 제공 가능**
 - 개인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성공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시 개인 참여 제한은 과도한 측면
 - (개선)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여,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허용
 - * 자본력 등이 부족한 개인이 참여하는 만큼 일부 **참여요건 및 심사요건 등은 완화 적용**하되, **사업화**는 **법인**으로 재참여하여 간소화된 테스트 후 허용
 - ※ 개인은 테스트베드 통과 이후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하여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를 통해 사업화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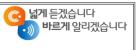
3. 기대효과

□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집에 따라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

단계분류	종 전	개 선 (기대효과)			
<u>개발 단계</u>	·테스트베드 참여 대상 을	·테스트베드 참여 대상 을			
·개인이나 법인이 로보어드	법인(핀테크 기업 등)으로	개인 까지 확대			
바이저를 개발 하고, 로보	제한	→ 개인은 테스트베드를			
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	→ 개인 이 로보어드바이저				
(코스콤 운영) 참여를 신청	개발 에 참여가 사실상	자산 운용 사 등과 협업 하여			
하여 테스트를 받는 단계	불가능	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가능			
<u>사업화 단계 I</u>	• 펀드·일임재산 운용업무				
·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	위탁은 동종 자산운용사				
베드를 통과하였으나 자산	등에만 가능	펀드·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			
운용사 등으로 등록 (인가) [*] 이	→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				
어려운 기업 이 자산운용사 등과 협업 하여 사업화 를	소규모 업체의 경우 자산				
하는 단계	운용사 등에 로보어드	운용업무를 위탁 받아			
. – –	바이저를 판매 하는 등의 방식의 사업화만 가능	운용 보수 등을 분배 받는 방식의 로보어드바이저			
* 등록(인가) 자기자본 요건 : (투자일임업) 15억원 등	0 귀의 시비와단 기증	사업화도 가능			
(집합투자업) 40억원 등		11 BH - 110			
사업화 단계 표	<투자일임업>				
·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	·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	·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			
(인가)하여 로보어드바이저 를	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해	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			
사업화 하는 단계	서는 40억원 이상의 자기	자기자본 요건 (40억원) 폐지			
	자본 필요	→ 소규모 투자일임업자도			
	→ 소규모 투자일임업자의	비대면 영업이 가능 하여			
	경우 비대면 영업이 제한	원활한 가입자 확보 가능			
	됨에 따라 가입자 확보에	*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일임			
	어려움	재산 직접 운용은 기 허용			
	<집합투자업>				
		·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			
	일임재산 직접 운용은 허용되나, 펀드재산의 직접	직접 운용 허용			
	이용되다, 현 —세 현기 국립 운용은 제한	→ 펀드재산 운용 분야에서			
	" -	로보어드바이저활용이			
	→ 펀드재산 운용 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을				
	도모어드마이저의 월 8 달 저해	마이지 합제와 자신군용 사간 협업 도 확대 가능			
	, , l ell	기 리 			



☑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http://www.fsc.go.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-+